

대구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4가단12685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판근

피고B

변론 종결 2024. 10. 23.

판결 선고 2024. 11. 13.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22. 12. 5. 체결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3. 1. 31. 접수 제90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31971 손해배상 사건에서 2015. 1. 8. "C은 원고에게 2015. 1. 30.까지 2,800만 원을 지급하되,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2015. 1. 31.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위 조정의 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나. D는 피고와 혼인하여 슬하에 E, F, C 3명을 자녀로 두었고, 2022. 12. 5. 사망하였다(이하 'D를 '망인'이라 한다).

다. 피고 및 E, F, C은 2022. 12. 5.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를 하였고, 2023. 1. 31.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9085호로 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C은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 지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인 2/9 지분을 피고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전한 것은 C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2/9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2,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인바, 위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 지분(2/9)을 포기하고, 피고로 하여금 그 지분을 상속하게 함으로써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C이 피고와 사이에 한 이 사건 협의분할은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한 사해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① 피고는 망인과 혼인하여 슬하에 C을 비롯한 3명의 자녀를 두었고, 1970년경부터 망인이 2022. 12. 5. 사망할 때까지 약 50년 이상 망인과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다. 피고는 혼인생활 중이던 2000. 10. 10. '대구 동구 G외 3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H호'를 피고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2013. 5. 8. 협의취득 절차를 통해 매도하고 그 무렵인 2013. 5. 14. 다시 '대구 동구 I건물(다세대주택) J호'를 피고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2018. 2. 20. 매도하였다. 그 무렵인 2018. 3. 11. 망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이 망인의 명의로 등기되기는 하였으나 그 매수대금 중 상당 부분은 피고 소유의 위 I건물 J호의 매도대금으로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경위에 비추어 실질적으로는 망인과 피고가 혼인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함께 취득한 것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무렵인 2018. 5. 4.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여 망인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고, 망인의 사망 후에도 계속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망인의 상속인들 중 일부만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 전부(망인과 피고의 자녀들이다)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노년의 부부가 일방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서 상당한 기간 함께 거주하다가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위 부동산을 부모의 공동소유로 여기면서 남은 부모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방식으로 그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 확보 및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고, 이는 우리 사회의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관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매매·증여 등 전형적인 사해행위의 양태와 달리 처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선행 사건을 필요로 하고, 그 결과에 있어서도 채무자의 기득재산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그 증가를 방해하는 것에 그친다.

④ 망인의 사망 및 이 사건 협의분할 무렵 C 또한 피고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이 사건 협의분할 시점으로부터 8년여 전에 발생한 것이고 그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원인이 C 등의 원고에 대한 공동상해인바 피고가 채권 발생 당시 성인이었던 C의 위 채무 부담 내역에 관하여 알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허이훈

별지